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57
----------	-------

발의연월일 : 2026. 2. 4.

발 의 자 : 이기현 · 김남근 · 강준현
박희승 · 박해철 · 김 윤
박지원 · 최민희 · 장철민
김교홍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저작물 이용허락의 거부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재산권자 등이 권리를 신탁하는 과정에서 지분권이나 공연·복제·전송 등 이용형태별로 권리의 일부를 신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권리 신탁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의 저작물 이용허락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문제되고 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연도별 사업보고서에

임원보수 만을 공개하고 있으나 임직원에게 보수 외에 업무추진비 등 각종 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어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제1항의 각 호 규정을 위반한 관리업자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명령이 누적되어도 집행되지 않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와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등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리업자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요청을 받은 경우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조제26호·제106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42조제2항제2호의2).

나. 저작권신탁관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임직원의 보수 뿐만 아니라 수당을 공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06조제7항제2호).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예산

관련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제6항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무 등을 위반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9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 중 “그 권리를”을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2호 중 “임원보수”를 “임직원 보수 및 수당”으로 한다.

제106조의2의 제목 중 “거부금지”를 “거부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허락 요청을 받은 경우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제10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예산 관련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지를”을 “정지 또는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중단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정지명령”을 “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으로, “계속한”을 “계속하거나 수수료를 수납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0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경우

6의3.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허락을 한 경우

7의2. 제108조제6항에 따라 제정·고시된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업무의 정지명령(제111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

제142조제2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제10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u>그 권리를 신탁받아</u>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6. ----- ----- ----- ----- <u>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u> ----- ----- -----.
27. ~ 36. (생 략)	27. ~ 36. (현행과 같음)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 ~ ⑥ (생 략)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⑦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임원보수</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연도별 사업보고서 3. ~ 5. (생략)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u>거부금지</u>) (생략) <u><신설></u> 제108조(감독)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u>정지</u>를 명할 수 있다.	2. <u>임직원 보수 및 수당</u>----- ----- ----- 3. ~ 5.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u>거부금지</u>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허락 요청을 받은 경우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u> 제108조(감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예산 관련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u>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 ---- ----- ----- ----- ----- ---<u>정지 또는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중단</u>---
---	--

1. ~ 6. (생략)

<신설>

<신설>

7. (생략)

<신설>

8.·9.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신설>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10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경우

6의3.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허락을 한 경우

7. (현행과 같음)

7의2. 제108조제6항에 따라 제정·고시된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8.·9.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
계속하거나 수수료를 수납한-----

3.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업무의 정지명령(제111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에 같음하여

제142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 략)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u>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u> 3. ~ 5. (생 략) ③ · ④ (생 략)	<u>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u> 제14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0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